

제3부

시정권고사례

※ 제3부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전체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으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이나 나이, 근무처 등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시정권고사례

의결번호 제2010-1호

대상보도 한국기자연대 2009. 12. 15.자 사회면 「멀쩡한 남편 정신병원 강제입원 악몽의 38일...」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김모 씨의 인신구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부인의 행실 및 부부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성명, 나이 및 주소지를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였다. 이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2호

대상보도 경인종합일보 2009. 12. 8.자 19면 「임대인 강간 미수 음식업주 구속」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성폭력범죄 사건 보도 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3호

대상보도 수도권일보 2009. 12. 8.자 19면 「오세훈 시장 압도적 우위」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매체에서 실시한 오세훈 현 시장과 야당 후보 간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는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4~8호

- 대상보도**
- 경기신문 2009. 12. 9.자 7면 「50대 청원경찰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경기매일 2009. 12. 9.자 15면 「○○도서관 청원경찰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아시아일보 2009. 12. 9.자 15면 「○○시 공무원 자살 신드롬?」 제하의 기사
 - 일간뉴스리더 2009. 12. 8.자 사회·경제면 「○○○○도서관 청원경찰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e-용인뉴스 2009. 12. 8.자 사회면 「용인시 공무원 또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9-43호

- 대상보도**
- 경기일보 2009. 12. 15.자 A04면 「가수 ○○ ‘매니저’ 사망 차량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경인일보 2009. 12. 15.자 19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중부일보 2009. 12. 15.자 A26면 「○○ 매니저 사망 번개탄 이용한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경제투데이 2009. 12. 14.자 연예면 「[단독]○○ 매니저 박 모 씨, 자살 추정 ‘자금 압박 주원인’」 제하의 기사
 - 뉴데일리 2009. 12. 15.자 연예면 「○○ 매니저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09. 12. 15.자 방송엔면 「○○ 매니저 사망 충격, 가스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12. 15.자 연예면 「○○ 매니저 숨진 채 발견... ‘개인사’로 인한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2009. 12. 14.자 연예 · 스포츠면 「○○ 매니저 박 모 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09. 12. 14.자 연예 · 스포츠면 「○○ 매니저 박 모 씨, BMW 차량서 숨진 채 발견...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더타임스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자살, 자신의 차량에서 주검으로 발견」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09. 12. 14.자 연예면 「○○ 매니저 사망,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데일리중앙 2009. 12. 14.자 뉴스면 (생활/문화) 「인기가수 ○○씨 매니저 숨진 채 발견... 경찰,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시뉴스 2009. 12. 14.자 스타넷면 「○○ 매니저 사망...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아이피통신 2009. 12. 14.자 연예 · 문화면 「○○ 매니저 ‘자살’ ... 자신의 승용차 안에 번개탄 피워」 제하의 기사
 - 리뷰스타 2009. 12. 14.자 연예계뉴스면 「○○ 매니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마이데일리 2009. 12. 14.자 엔터테인먼트면 「○○ 매니저, 자살...경찰 ‘차량서 번개탄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메디컬투데이 2009. 12. 14.자 뉴스투데이면 「가수 ○○ 매니저,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09. 12. 14.자 엔터테인먼트면 「○○ 매니저 자살 ‘충격’, 가스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9. 12. 14자 종합뉴스면 「○○매니저, 자살 추정 사망」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티브이 2009. 12. 14자 연예면 「가수 ○○매니저, 자살 추정...경찰 ‘가스질식사’」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09. 12. 15.자 연예면 「가수 ○○매니저,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09. 12. 14.자 연예스포츠면 「[연예가화제]○○매니저 박 모 씨, 차량서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12. 15.자 문화·연예면 「○○매니저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츠뉴스닷컴 2009. 12. 14.자 연예면 「○○매니저 사망, 차량에서 가스질식으로 인한 자살추정...」 제하의 기사
- 이투데이 2009. 12. 15.자 뉴스면 「○○매니저 사망 ‘자신의 차에서 가스 질식’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인터넷일간경기 2009. 12. 15.자 뉴스면 「○○매니저 자살 ‘가스질식’ 추정」 제하의 기사
- 인터넷조은뉴스 2009. 12. 15.자 뉴스면 「○○매니저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지털한국재경신문 2009. 12. 14.자 뉴스면 「○○매니저, 숨진 채 발견...사망 전 ‘미안하다’ 메시지,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09. 12. 14.자 뉴스면 「가수 ○○매니저 자살」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09. 12. 14.자 뉴스면 「○○매니저 자살, 죽기 전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보내」 제하의 기사
- 파이미디어 2009. 12. 14.자 연예면 「○○매니저 자살...경찰 “가스 질식사” 추정」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2009. 12. 14.자 연예면 「가수 ○○매니저 ‘사망’...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프런티어타임스 2009. 12. 14.자 사회면 「○○매니저, 자살 추정...번개탄 피운 흔적 발견돼」 제하의 기사
- 헤이맨뉴스 2009. 12. 14.자 기획취재면 「가수 ○○매니저 박 모 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09. 12. 14.자 깜뉴스면 「○○매니저 박 모 씨, 자신의 차량서 숨진채 발견 “자살 추정” 충격」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가수의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

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유명 가수 매니저의 자살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가수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및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 27.

의결번호 제2010-44호

대상보도 경인종합일보 2010. 1. 21.자 19면 「병원 방사선기사 미성년자 성추행」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과 소속부서 및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 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5호

대상보도 전남조은뉴스 2009. 12. 18.자 연예면 「하늘마음 정신수련원 탈런트 (K)김씨 누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모 정신수련원 회원들이 원장으로부터 수련원 운영권을 뺏으려한 사건에 모 탈런트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그의 성명을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6호

대상보도 투데이코리아 2010. 1. 13.자 사회면 「성매매 연루 ○○병원장, 연락 두절」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47~52호

- 대상보도**
- 세계일보 2010. 1. 22.자 8면 「영화 ‘○○’ 판권 미끼로 투자자금 5억원 가로채」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1. 21.자 사회면 「“영화 ‘○○’ 판권 주겠다” 속여 5억 가로챈 영화사 대표 기소」 제하의 기사
 - 시대일보 2010. 1. 22.자 15면 「영화 ‘○○’ 제작사대표 사기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 스타뉴스 2010. 1. 21.자 뉴스·이슈면 「‘○○’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 조이뉴스24 2010. 1. 21.자 문화·연예·스포츠면 「영화 ‘○○’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 21.자 문화·연예·스포츠면 「영화 ‘○○’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로 있는 영화제작사의 명칭 및 해당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제목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3호

대상보도 경남일보 2010. 1. 14.자 4면 「양산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지난달 부산서 할머니도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살인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 피해자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4호

대상보도 경북매일신문 2010. 1. 12.자 4면 「30대 경찰관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업과 근무처 및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2. 22.

의결번호 제2010-55호

대상보도 내외일보 2010. 2. 3.자 5면 「‘행복전도사’ ○○○ 교수의 불륜 섹스 비디오 충격」 제하

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 강사인 ○○○ 교수의 불륜 관계와 관련한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향후 유사 보도 시 그 대상이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56호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0. 2. 10.자 6면 「등기소장 물속 승용차서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57~59호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10. 2. 16.자 14면 「동료에 왕따 경찰관 자살」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10. 2. 16.자 사회면 「경찰관 설 연휴 자택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10. 2. 16.자 이슈&포커스면 「설 연휴에 은행원 · ‘왕따’ 경찰관 잇따라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 근무경력과 현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

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0~65호

-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10. 3. 3.자 14면 「○○대병원 진료처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2.자 전국면 「○○ 대학병원 고위 인사 스스로 목숨 끊어」 제하의 기사
 - 메디컬투데이 2010. 3. 3.자 사건·사고면 「○○대병원 교수 음독자살 “자살원인은 글썽”」 제하의 기사
 - 코리아헬스로그 2010. 3. 3.자 의료계뉴스면 「○○대병원 고위 인사 자택서 ‘음독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10. 3. 3.자 루머/잠망경면 「대학병원 교수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메디 2010. 3. 3.자 병원·의원면 「○○대병원 고위인사 교수 음독 자살」, 「개인원장·의대교수 등 잇단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영문이니셜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한 병원명과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6,67호

- 대상보도**
- 전북일보 2010. 3. 8.자 6면 「“추한 모습 싫다” 위암말기 ○○면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전북일보인터넷신문 2010. 3. 7.자 사회면 「“추한 모습 싫다” … ○○○ 씨 위암말기에 투신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실명, 나이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

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8호

대상보도 신동아 2010년 3월호 246~257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히로뽕 100g 작업하면 검찰이 풀어준대요”」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 시 마약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필로폰)의 사용량, 사용방법 및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3. 22.

의결번호 제2010-69호

대상보도 중부일보 2010. 3. 19.자 23면 「2인조 대학생 강도·강간범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구부원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70,71호

- 대상보도** - 충북일보 2010. 3. 31.자 5면 「시신 신고 택시영업 엮기 살인마 ‘경악’」 및 2010. 4. 1.자 5면 「○○○ 추가범행 ‘네버엔딩 스토리’」 제하의 기사
- 충북인뉴스 2010. 3. 31.자 사회교육면 「택시기사 채용, 2006년 전 신원조회 안해 화 키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을 공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72~81호

- 대상보도** - 전북일보 2010. 3. 15.자 6면 「지역축협 상무이사 목매」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10. 3. 12.자 사건사고면 「○○○○ 축협 임원,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소통뉴스 2010. 3. 12.자 사회면 「○○·○○축협 임원 목매 사망…경찰 조사중」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익산투데이 2010. 3. 18.자 사회·문화면 「○○·○○ 축협 상임이사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 조인스닷컴 2010. 3. 12.자 사회면 「○○○○ 축협 임원,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투데이안 2010. 3. 12.자 사회면 「○○서 축협상무이사 목매 사망…경찰 사망경위 조사중」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나이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82~89호

대상보도

- 대전일보 2010. 3. 16.자 6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축협 조합장 목매」 제하의 기사
- 충남일보 2010. 3. 16.자 6면 「○○축협 조합장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충청일보 2010. 3. 16.자 4면 「경찰 내사반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충청투데이 2010. 3. 16.자 4면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축협 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3. 15.자 사회면 「○○○ ○○축협조합장, 자택 추사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3. 15.자 사회면 「경찰 내사반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3. 15.자 사회면 「경찰 내사반던 ○○축협조합장 자살」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2010. 3. 15.자 사회/문화면 「○○축협조합장, 금품살포혐의로 경찰내사 도중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나이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0호

대상보도 경도신문 2010. 3. 16.자 11면 「고교 복싱부 코치 부부싸움 후 자살」 및 12면 「○○복싱 길잡이 ○○○ 코치 사망」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 나이 및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경력을 상세히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1,92호

대상보도 - 국제신문 2010. 3. 20.자 6면 「뇌물비리 불똥?...최근 운동장 공사한 학교들 어수선」 제하의 기사

- 부산일보 2010. 3. 20.자 6면 「경찰 내사 진행 중학교 교장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의 영문이니셜 및 학교 소재지를 동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3호

대상보도 중부매일 2010. 3. 25.자 2면 「○○우체국 직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4. 26.

의결번호 제2010-94호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0. 4. 9.자 6면 「개 소음 문제로 말다툼 50대 흥기 휘둘러 이웃 할머니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살인 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피의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지를 면 소재 마을 단위까지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5호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0. 4. 11.자 25면 「중견재벌 ○○에탄을 ○대표 여자연예인 성폭행 혐의 ‘구속’」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피의자 및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영문이니셜,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명칭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직업 및 소속 연예기획사의 명칭을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및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6,97호

- 대상보도**
- 충청투데이 2010. 4. 26.자 5면 「채무자 아들 협박 교도관 입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4. 23.자 사회면 「청주경찰 채무자 아들 협박 교도소 직원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주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8호

대상보도 울산매일 2010.5. 4.자 5면 「마약투약 빌미 금품 뜯은 신문사 대표 · 간부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99~101호

-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4. 17.자 4면 「전 ○○시의원 투신 숨져」 제하의 기사
 - 경남일보 2010. 4. 19.자 4면 「前 ○○시의원 투신」 제하의 기사
 - 통영인터넷뉴스 2010. 4. 16.자 뉴스면 「40대 남성 충무교(橋)에서 투신」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의원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02~111호

- 대상보도** - 헤럴드경제 2010. 4. 30.자 25면 「비리 혐의 공무원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동양일보 2010. 5. 3.자 3면 「○○ 보건소장 자살」 제하의 기사
 - 충청일보 2010. 5. 3.자 3면 「'비리 의혹' ○○ 보건소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메디 2010. 4. 30.자 사회면 「보건소장 스스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수사받던 ○○군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비리 의혹' 검찰조사 받던 ○○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4. 30.자 사회면 「○○군 보건소장 검찰수사 받던 중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에 인사비리 수사받던 ○○군 공무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풀리뉴스 2010. 4. 30.자 사회/문화면 「○○군 보건소장 검찰수사 받던 중 자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4. 30.자 사회면 「검찰수사받던 ○○군 보건소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2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0. 4. 6.자 사회면 「자살한 여대생,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과 학과명, 학년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3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0. 4. 10.자 사회면 「[사건 인사이트] 어느 베테랑 형사의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근무경력과 수상 이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4호

대상보도 프라임뉴스 2010. 3. 15.자 사회면 「○○군 축협조합장이○○ 씨 스스로 목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5. 24.

의결번호 제2010-115,116호

대상보도 - 강원일보 2010. 5. 11.자 6면 「카지노 폐장시간 타짜들이 당신을 노린다」 제하의 기사
- 뉴스타운 2010. 5. 24.자 사회면 「충남경찰청, 꽃뱀 낚 사기도박단 6명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에 이용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사기도박 사건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구입방법, 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처럼 약물의 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17,118호

대상보도 - 조선일보 5. 7.자 A12면 「‘본드 위조지문’에 日 입국심사대 뚫렸다」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5. 7.자 사회면 「‘본드 위조지문’에 日 입국심사대 뚫렸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본드를 이용한 위조 지문의 제작 과정과 밀입국 방법 등 범죄 수법과 범행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19~130호

- 대상보도**
- 광주매일 5. 17.자 6면 「‘동업자 죽이려다…’」 제하의 기사
 - 광주일보 5. 15.자 3면 「20대 女 ‘산소마스크 의문사’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 한국일보 5. 17.자 2면 「의문사 20대 女 가방에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5. 17.자 5면 「20대 女, 산소마스크 쓴 채 숨져」 제하의 기사
 - 일요서울 5. 30.자 34면 「망자에 씌워진 ‘산소마스크’가 수상하다」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5. 16.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사망 여성 소지품서 살인계획서 발견」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5. 17.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女’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5. 17.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쓰고 숨진 女 가방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 프리덤포문 5. 16.자 지역면 「‘20대 女 미스터리 죽음’…살인계획서 확보 수사중」 제하의 기사
 - 한국아이닷컴 5. 16.자 사회면 「의문사 20대 女 가방에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 뉴시스 5. 16.자 사회면 「‘20대 女 미스터리 죽음’…살인계획서 확보 수사중」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5. 16.자 사회면 「산소마스크 사망 女 가방서 ‘살인계획서」」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밀폐된 공간에 드라이아이스를 두어 질식사시키는 등의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1호

대상보도 사건의내막 4. 25.자 38~39면 「신종마약으로 둔갑한 ‘수면 마취제’ 연예인들도 중독 심각」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 등 약물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2호

대상보도 민주신문 2010. 5. 23.자 16~17면 「단속 비웃듯 체리 급속 확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의 명칭,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가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3호

대상보도 뉴스포스트 2010. 4. 18.자 14면 「대학 MT 성폭력 온상인가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선…」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과 학과명, 학년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4호

대상보도 시사저널 2010. 6. 8.자 42면 「서울대생 잇따른 자살 왜?」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학교의 명칭, 출신지역,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6. 21.

의결번호 제2010-135호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0. 7. 17.자 5면 「우울증 경찰간부 아내 살해 뒤 도주」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 등을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언론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36~138호

- 대상보도**
- 경남매일 2010. 6. 9.자 7면 「흥기로 동료폭행 선원 영장」 제하의 기사
 - 거제신문 2010. 6. 8.자 사회면 「통영해경, 폭력사범 검거」 제하의 기사
 - 뉴스통영 2010. 6. 8.자 뉴스종합면 「통영해경, 흥기들고 폭력 행사한 선원 검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

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39호

대상보도 신동아 2010. 8월호 158~165면 「잔혹하고 끔찍한 10대들의 살인놀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방법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범죄 사건의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40호

대상보도 일요시사 2010. 7. 4.자 28면 「환각성 ‘마약’ 인가 치료용 ‘명약’ 인가」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마약 등 약물관련 보도 시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명칭 및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41~150호

대상보도 - 매일경제 2010. 6. 11.자 A31면 「방산베리 조사받던 업체 前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일보 2010. 6. 11.자 A13면 「검찰조사 받은 前 방위산업체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중앙일보 2010. 6. 11.자 23면 「검찰 조사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한겨레 2010. 6. 11.자 12면 「○○○ ○○○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 2010. 6. 20.자 12면 「조사 길어지면서 심리적 압박? ○○○ ○○○ 전 대표 검찰 조사 받은 후 자살」 제하의 기사
- 일요서울 2010. 6. 20.자 21면 「○○○ ○○○ 전 대표이사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핌 2010. 6. 10.자 경제면 「비리의혹 조사받던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서울투데이 2010. 6. 12.자 사회면 「○○○○○○○ 前 대표, 검찰조사 받은 후 ‘자살’」 제하의 기사
- 컨슈머타임스 2010. 6. 10.자 종합면 「○○○ ‘○○○’ ○○○ 전 부회장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6. 10.자 사회면 「‘비리 의혹’ 조사받던 방산업체 전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명, 재직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51~169호

- 대상보도**
- 경향닷컴 2010. 7. 3.자 사회면 「‘○○’ 제작사 자살...드라마 제작 자금난 때문인듯」 제하의 기사
 - 뉴데일리 2010. 7. 3.자 연예면 「또 베르테르 효과?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자살, 유서발견 “어머니께 죄송...”」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금난 비관해 자살」 제하의 기사
 - 모닝뉴스 2010. 7. 3.자 뉴스면 「SBS ‘○○’ 제작사 대표, 자금난에 목 매 자살...‘베르테르 효과?’」 제하의 기사
 - 민주일보 2010. 7. 3.자 연예스포츠면 「○○ 제작사 대표 자금난 비관 자살」 제하의 기사

- 서울신문NTN 2010. 7. 3.자 종합면 「○○하이어 ○○제작자 자살…연예계 자금난 후폭풍」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TV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목 맨 채 발견…자살 추정 ‘충격’」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10. 7. 3.자 연예스포츠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자금난 때문으로 추정」 제하의 기사
- 아이에스플러스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해 충격」 제하의 기사
- 이머니투데이 2010. 7. 3.자 사회/문화면 「‘○○’ 제작사 대표 자살…“어머니에 죄송” 유서 남겨」 제하의 기사
- 이투데이 2010. 7. 3.자 경제면 「○○ 제작자 겸 ○○필름 대표 이모 씨 자살 왜?」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7. 3.자 스포츠연예면 「‘○○’ 제작사 대표 자살, 자금사정 비판 추정」 제하의 기사
- 조인스닷컴 2010. 7. 3.자 연예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해 충격」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10. 7. 3.자 방송,연예면 「‘○○’ 제작사 대표 자살…유서에 “어머니께 죄송하다”」 제하의 기사
- 프라이مج정 2010. 7. 3.자 정치/시사면 「‘베르테르 효과?’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7. 3.자 스포츠/문화면 「드라마 ‘○○’ 제작사 대표 자살」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10. 7. 3.자 깜뉴스면 「드라마 ‘○○’ 제작자 ‘자살’…자금난 원인인 듯」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대표로 재직 중인 드라마 제작사의 명칭 및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0호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0. 7. 16.자 7면 「모자가 숨진 채 발견 생활고 비관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및 주소지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1호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0. 8. 1.자 24면 「○○금융 증권사 임원 연쇄 자살 “말 못할 사연 있나?”」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8. 16.

의결번호 제2010-172호

대상보도 뉴스포스트 2010. 8. 22.자 20면 「‘버튼’ 한 번에 성범죄자 낙인…호기심에 음란물 보낸 10대들」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도 내용과 무관한 개인의 초상을 필요이상으로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2항 및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73호

대상보도 경남매일 2010. 8. 7자 사회면 「농민회 간부 수천만 원 속옷 훔친 엽기행각」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농민회의 간부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74~181호

- 대상보도**
- City(시티) 2010. 9. 1.자 3면 「○○ 이발사, 직원 사칭 돈뜯어」 제하의 기사
 - evening(이브닝) 2010. 9. 1.자 3면 「“나 ○○ 관리실장이야” 돈 뜯은 ○○○ 이발사」 제하의 기사
 - 경인일보 2010. 9. 2.자 30면 「○○ 이발사가 고위직 사칭 ‘소송 로비’ 빌미로 돈 뜯어」 제하의 기사
 - 기호일보 2010. 9. 2.자 19면 「“나, ○○○ 관리실장인데” 소송로비 명목 돈 뜯어낸 구내 이발사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
 - 인천일보 2010. 9. 2.자 19면 「○○○ 직원 사칭 사기 2명 불구속」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9. 1.자 사회면 「인천경찰 ‘소송 로비’ 돈 뜯은 ‘○○○ 이발사’ 입건」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9. 1.자 사회면 「“난 ○○ 관리실장이야” 돈 뜯은 ○○○ 구내 이발사」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2010. 9. 1.자 사회면 「○○○ 이발사 “나 ○○○ 관리실장인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82~189호

- 대상보도**
- 경인종합일보 2010. 8. 6.자 15면 「'비리혐의' ○○소방서장, 관사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대구신문 2010. 8. 6.자 5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관사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시민일보 2010. 8. 6.자 18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8. 5.자 사회면 「○○○ ○○소방서장,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8. 5.자 사회면 「경찰 내사중 ○○소방서장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8. 5.자 사회면 「○○소방서장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10. 8. 5.자 생활·문화면 「○○소방서장 자살 추정, 파주소방서 재직시 비리 의혹 참고인 소환조사 후」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8. 5.자 사회면 「○○소방서장, 5일 사망...사인은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0~192호

- 대상보도** - 남도일보 2010. 8. 10.자 6면 「현직 경찰 자택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광일보 2010. 8. 10.자 4면 「현직 경찰관 자택서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2010. 8. 10.자 15면 「화순서 현직 경찰관 자택서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3~197호

- 대상보도**
- 강원도민일보 2010. 9. 1.자 5면 「해양전투경찰 함상서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강원일보 2010. 9. 1.자 5면 「해양 경비합정서 전경 목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국매일 2010. 9. 1.자 7면 「해상훈련 마친 전경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8. 31.자 사회면 「경비합정 내에서 전투경찰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9. 1.자 사회면 「경비합정 내에서 전투경찰 목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무 중인 합정의 명칭 및 계급, 직무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198~203호

- 대상보도**
- 뉴스한국 2010. 9. 9.자 방송연예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했던 황 모 씨 자살 소식에 네티즌들 ‘충격’...아이들은?» 제하의 기사
 - 대전일보닷컴 2010. 9. 9.자 사회면 「‘아빠와 ○○○’ 출연 황씨 투신자살...“혼혈 3남매 어떡해~”」 제하의 기사

- 서울신문NTN 2010. 9. 9.자 종합면 「'○○○ 아빠' 태종대서 투신자살... '인간극장' 출연자」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 2010. 9. 9.자 문화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자, 절벽서 투신자살... "도대체 왜?"」 제하의 기사
- 이데일리 2010. 9. 9.자 연예면 「'아빠와 ○○○' 아빠, 바다에 투신 자살 "3남매는 어떡해"」 제하의 기사
- 티브이데일리 2010. 9. 9.자 방송/연예면 「인간극장 '아빠와 ○○○' 출연 주인공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 및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9. 27.

의결번호 제2010-204~207호

- 대상보도**
- 한국일보 2010. 10. 4.자 2면 「軍, 해외 파병부대 성문란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스포츠한국 2010. 10. 4.자 37면 「軍, 해외 파병부대 성문란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인터넷한국일보 2010. 10. 4.자 사회면 「軍, 해외 파병부대 성문란 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 오마이뉴스 2010. 10. 4.자 사회면 「○○○ 파병 ○○부대, 남녀 장교간 성관계 3명 징계」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 파병 국군 부대 안에서 성문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의 소속부대명 및 직책 등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08호

대상보도 뉴스웨이 2010. 10. 4.자 연예면 「'지하철난투극', 소녀는 반말에 할머니는 손찌검에...“쫄쫄”」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지하철 안에서 10대 소녀와 할머니가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개인의 초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09호

대상보도 동양일보 2010. 9. 24.자 2면 「남편 살해 혐의 50대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0호

대상보도 경인일보 2010. 10. 1.자 23면 「10년 간 회사돈 14억 물쓰듯 사치생활 명품녀 탈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한 건설회사의 영문이니셜과 소재지 및 직책, 근무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

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1~213호

- 대상보도**
- 경기북부일보 2010. 9. 17.자 사회면 「‘○○○ 코리아’ 박 사장…‘가정폭력 혐의’ 오명」 제하의 기사
 - 스포츠서울닷컴 2010. 9. 17.자 사회면 「‘술먹고 아내 잔혹폭행’ 유명 외국 커피업체 사장 외 국행」 제하의 기사
 - 비즈플레이스인터넷 2010. 9. 17.자 비즈매거진면 「○○○ 박○○ 사장 ‘가정폭력 혐의’」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4호

대상보도 뉴스웨이 2010. 9. 29.자 사회면 「군산해경, 선상 살인 ‘사체유기’ 범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5호

대상보도 경향닷컴 2010. 9. 24.자 사회면 「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 ‘바바리 공무원’ 입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급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6, 217호

대상보도 - 경향닷컴 2010. 10. 3.자 사회면 「새벽 홍대앞 성추행 전경, 간단히 제압한 사람」 제하의 기사
- 코리아뉴스타임즈 2010. 10. 4.자 사건사고면 「새벽 홍대앞 성추행 전경, 간단히 제압한 사람」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및 소속 경찰서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18~225호

대상보도 - 경기신문 2010. 9. 27.자 6면 「○○시 보건소 직원 40대 자살」 제하의 기사

- 인천일보 2010. 9. 27.자 19면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전국매일 2010. 9. 27.자 6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9. 24.자 사회면 「‘음주운전’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9. 24.자 사회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더데일리 2010. 9. 24.자 사회면 「‘음주운전에 빛까지’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9. 24.자 사회면 「‘음주운전’ 보건소 직원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9. 24.자 사회면 「○○보건소 직원 자택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직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26호

대상보도 우먼센스 2010년 10월호 396~398면 「흑진주 삼남매 남기고 떠난 ○○○ 씨 가슴아픈 사연」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사진을 공개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0. 25.

의결번호 제2010-227,228호

대상보도 - 레이디경향 2010년 11월호 238~241면 「남한에 남겨진 고 황장엽의 숨겨진 부인과 아들...

- 수년 간 추적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가족 비화 공개」제하의 기사 및 사진
- 우먼센스 2010년 11월호 398~400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숨겨진’ 40대 여인, 초등생 아들 소문 확인 취재」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인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숨겨진 아내로 추정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위치와 사진, 가족관계 및 아들의 나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29~232호

- 대상보도** - 문화일보 2010. 10. 20.자 27면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 제하의 기사
- 중부매일 2010. 10. 20.자 3면 「성폭행 반항 이웃집 노파 살해 60대 붙잡혀」 제하의 기사
- 사건의내막 2010. 10. 31.자 24면 「성관계 거부하자 ‘육’…팔순 노파 살해」 제하의 기사
- 이타임즈 2010. 10. 20.자 사회면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3, 234호

- 대상보도** - 동아일보 2010. 10. 8.자 A12면 「“스타 되려면 스폰서 있어야” 10대 지망생에 성매매 강요」 제하의 기사

- 동아닷컴 2010. 10. 8자 사회면 「가수 지망생 시켜 스폰서 sexual 거부하자 “일이라 생각하라” 강요」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영문이니셜 및 공동운영자가 월드컵 당시 유명해진 ‘○○○○○ ○○녀’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5~238호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10. 22.자 6면 「○○예총 간부 가족의 비극」 제하의 기사
 - 경남일보 2010. 10. 22.자 4면 「○○ 예총회장 부인 살해」 제하의 기사
 - 내외일보 2010. 10. 20.자 3면 「창원시 ○○ 예총회장, 부인 불륜의심 피살」 제하의 기사
 - 대한투데이 2010. 10. 20.자 4면 「‘남자관계 복잡하다’ 남편이 부인 살해」 및 2010. 10. 21.자 4면 「“바람피웠다” 아내 각목으로 때려 살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회 회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39호

대상보도 구로오늘신문 2010. 10. 11.자 7면 「“장애아들 복지 혜택 받게 해주세요” 50대 가장 목매 자

살 ‘슬픈 父情’」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족인 아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전과기록 및 아들이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0호

대상보도 거제타임즈 2010. 10. 11.자 정치/행정면 「해경, 농약마신 80대 할아버지 긴급 후송」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1~246호

- 대상보도**
- 시민일보 2010. 10. 11.자 18면 「우울증 경찰간부 숙직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전광일보 2010. 10. 11.자 4면 「우울증 앓던 ○○경찰 숙직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전남일보 2010. 10. 11.자 6면 「○○경찰청 간부 숙직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2010. 10. 11.자 15면 「○○경찰 잇단 자살 ‘초상집」」 제하의 기사
 - 호남신문 2010. 10. 11.자 6면 「‘끊이지 않는 자살 경찰’ 내부서 별다른 조치 없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0. 10.자 사회면 「○○경찰청 간부 사무실서 목 매 숨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7,248호

대상보도 - 경남신문 2010. 10. 22.자 6면 「차로 친구 숨지게 한 70대 죄책감에 음독 자살 기도」 제하의 기사

- 국제신문 2010. 10. 22.자 11면 「차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70대 음독해 병원후송됐으나 중태」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49~264호

대상보도 - 더데일리포커스 2010. 10. 21.자 6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메트로 2010. 10. 21.자 12면 「○○대 교수 연구실서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일보 2010. 10. 21.자 A10면 「○○대 교수 자살…“왕따 비관”」 제하의 기사

- 헤럴드경제 2010. 10. 29.자 10면 「○○대 교수 자살 그 진실은…가정불화·따돌림 등 의혹 무성 지인들 “부당권력 희생양” 주장」 제하의 기사

- 국제신문 2010. 10. 21.자 8면 「○○대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원 2010. 10. 20.자 사회면 「○○대학교 교수 연구실서 자살, 이유는?»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10. 10. 21.자 사회면 「○○대 교수 자살...경찰 “교수사회 왕따 당한 듯”」 제하의 기사
- 데일리중앙 2010. 10. 20.자 사회면 「○○대 40대 교수, 연구실서 자살...직장과 가족 문제 고민?» 제하의 기사
- 뷰스앤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목매 자살. ○○대, 유서 공개 안해」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 조선닷컴 2010. 10. 21.자 사회면 「○○대 교수 자살...“왕따 비관”」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10. 10. 20.자 사회면 「○○대 교수 연구실서 목 매 자살」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교수로 재직한 대학 및 학과 명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65~270호

- 대상보도**
- 한국일보 2010. 10. 26.자 12면 「○○대생 또 자살」 제하의 기사
 - 시사신문 2010. 11. 7.자 34면 「‘어떻게 들어갔는데...’ ○○대생 또 자살」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10. 10. 28.자 사회면 「○○대생의 연이은 자살에 왜 언론이 주목할까?」 제하의 기사
 - 서울신문NTN 2010. 10. 26.자 사회면 「제적당한 ○○대생 자살...‘어떻게 들어온 대학인데...’」 제하의 기사
 - 코리아뉴스타임즈 2010. 10. 28.자 종합뉴스(사건/사고)면 「○○대생의 연이은 자살에 왜 언론이 주목할까?」 제하의 기사
 - 한경닷컴 2010. 10. 26.자 사회면 「○○대생, 학사경고 제적당하자 ‘자살’ 읊들어 4번째...」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학 중인 대학 및 학과명, 과거 이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71~273호

- 대상보도**
- 뉴시스 2010. 10. 31.자 사회면 「○○서 자살 방화 발생...60대男 사망」 제하의 기사
 - 더데일리 2010. 10. 31.자 사회면 「부부싸움 후 자살 방화...60대男 숨져」 제하의 기사
 - 재경일보 Online 2010. 10. 31.자 사회면 「○○서 자살 방화 발생...60대 男 사망」 제하의 기사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1. 22.

의결번호 제2010-274호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0. 11. 4. 자 6면 「전직 프로축구선수 뺑소니 영장」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다는 사실 및 소속 팀, 선수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75호

대상보도 대한투데이 2010. 11. 30.자 5면 「부부싸움끝 방화 이웃주민 숨져…」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지를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76~279호

대상보도

- 문화일보 2010. 11. 5.자 8면 「교육청감사 받은 사학 행정실장 가족 숨진채 발견」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중부일보 2010. 11. 5.자 1면 「힘들다」 연가내고 일가족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노컷뉴스 2010. 11. 5.자 사회면 「“저수지 사망 일가족, ○○교육청 감사 때문?”」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뉴데일리 2010. 11. 5.자 사회면 「교육청 표적 감사에 일가족 함께 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살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에서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 동기는 통상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목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살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

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0호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2010. 11. 16.자 사회면 「[속보]○○아리안 분양대행사 대표...음독자살 기도」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1~283호

대상보도 - 거제나우 2010. 11. 25.자 사건/사고면 「농협 합병 앞두고 관계자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거제인터넷신문 2010. 11. 27.자 농·수·축면 「○○농협과 ○○통협의 통합은 처음부터 무리수?」 제하의 기사 및 사진

- 모닝뉴스 2010. 11. 25.자 사회사건면 「합병절차 농협간부 음독 사망」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책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의결번호 제2010-284호

대상보도 전북일보 2010. 11. 30자 6면 「30대 경찰관 신병 비관 자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권고사항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살자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0. 12. 13.

